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방 위 사 업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및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의 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,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구성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의 정원 2명(대령 2명)을 공무원의 정원 2명(4급 2명)으로 배정하며,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 및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,

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, 6급 2명)을 방위사업청의 정원으로 이체하고, 방위사업청의 별정직 정원 1명(6급 상당 1명)을 일반직 정원 1명(6급 1명)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1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지휘”를 “우주·지휘”로, “계약에 관한 사무”를 “계약에 관한 사무 및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미래도전국방 기술 사업관리 업무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지휘통제통신사업부”를 “우주지휘통신사업부”로, “무인사업부”를 “첨단기술사업단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4의 제목 “(지휘통제통신사업부)”를 “(우주지휘통신사업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”을 각각 “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지휘”를 각각 “우주·지휘”로 한다.

제17조의7의 제목 “(무인사업부)”를 “(첨단기술사업단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무인사업부장”을 각각 “첨단기술사업단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“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 관리 및 지원 업무”로 신설한다.

제21조제2항 후단 중 “20명”을 “23명”으로 한다.

제22조 제2항 후단 중 “50명”을 “49명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578명”을 “576명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27조제1항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388”을 “394”로 하고, 별정직 계 및 5급 상당 이하 “1”을 각각 “0”으로 하며, 일반직 계 “386”을 “393”로 하고, 3급 또는 4급 이하 “377”을 “384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739”를 각각 “735”로 하고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71”을 “66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직무)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지휘·통제·통신·유도무기· 감시·전자·무인 분야 방위력 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 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.	제15조(직무)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우주·지휘·통제·통신·유도 무기·감시·전자·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 및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미래도 전국방기술 사업관리 업무를 관 장한다.
제17조(하부조직) ① 미래전력사 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 · 지휘통제통신사업부·유도무 기사업부·감시전자사업부 및 무인사업부를 둔다.	제17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미래전력사업지원부· 우주지휘통신사업부·유도무기 사업부·감시전자사업부 및 철 단기술사업단을 --.
② 삭 제 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4(지휘통제통신사업부) ①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 다.	제17조의4(우주지휘통신사업부)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----- ----- --.
②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----- -----.
1. 지휘·통제·통신·정보 분	1. 우주·지휘·통제·통신·정

- 야 사업계획의 수립
- 2. 지휘·통제·통신·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·통제
- 3. 지휘·통제·통신·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
- 4. 지휘·통제·통신·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계약관리

제17조의7(무인사업부) ① 무인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.

② 무인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호 ~ 4호 (생략)

<추가>

제21조(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

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이

- 보 -----
- 2. 우주·지휘·통제·통신·정보 -----
- 3. 우주·지휘·통제·통신·정보 -----
- 4. 우주·지휘·통제·통신·정보 -----

제17조의7(첨단기술사업단)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.

② 첨단기술사업단장 -----

1호 ~ 4호 (현행과 같음)

5.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관리 및 지원 업무

제21조 ① (생략)

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

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20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

제22조 ① (생략)

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의 소속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50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

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23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

제22조 ① (생략)

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의 소속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49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

<p>다. 제24조(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)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8명의 범 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 다.</p> <p>제27조(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)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의 헬기사업부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 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1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 업팀을 둔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28조(소형무장헬기체계팀)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의 헬기사업부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 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1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체계 팀을 둔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다. 제24조(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) ----- ----- 576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.</p> <p>제27조(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023 년 12월 31일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소형무장헬기체계팀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2023 년 12월 31일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1]
방위사업청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군인제외) 정원표(제21조제1항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총계	388	394	+6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1	0	-1
5급 상당 이하	1	0	-1
일반직 계	386	393	+7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377	384	+7
·	·	·	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2]

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군인제외)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총계	739	735	-4
일반직 계	739	735	-4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671	667	-4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제처 행정법제국	
연 락 처	(044) 200 - 6626